

부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9년 8월 21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9년 8월 21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54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(2009년 9월 3일) 상정
- 제157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(2009년 12월 16일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사회복지과장 김정숙)

가. 제안이유

-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이 정하는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시설주관기관(시장)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법 제22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 및 점검요원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3조)
- 사전점검 대상은 법 제7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로 함.(안 제4조)

-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되어야 하며, 점검을 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과 점검요원 2명 이내로 함.(안 제5조)
- 점검요원은 부천시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요원 중 시설주관 기관이 위촉한 자로 하며,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현장조사, 점검 및 확인으로 하고 업무를 수행한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시설주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함.(안 제6조)
- 시설주관기관은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11조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| 질 의 내 용 | 답 변 내 용 |
|--|--|
| (1차회의시) ○ 건축인허가시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편의시설 완비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? ○ 그러함에도 굳이 공무원과 점검요원으로 하여금 사전점검을 하도록 하는 것은 또다른 규제가 아닌가? ○ 경기도 표준안과는 다른 조항이 많은데? | ○ 사회복지과에 협조를 받고 있음. ○ 경기도 표준조례안을 참고한 제정안이며, 규제보다는 장애인편의를 도모하는 취지에서 준공검사 전에 장애인편의시설을 확인하고 적합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임. ○ 표준안을 참고하여 실정에 맞게 내용을 정비함. |

| 질 의 내 용 | 답 변 내 용 |
|--|---|
| <p>○ 조례제정전 건축과와 충분히 협의 해 보았는가?</p> <p>(2차회의시)</p> <p>○ 사전점검 제도가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제도운영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임.</p> | <p>○ 조례안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 다른 의견이 없었음. (이상 사회복지과장)</p> <p>○ 잘 알겠음. (이상 사회복지과장)</p> |

4. 토론요지

가. 반대토론

(1차회의시)

- 건축물 준공검사전 공무원과 민간인 점검요원으로 하여금 사전점검을 받도록 하는 것은 옥상옥 즉, 새로운 규제가 될 수 있으며, 경기도 표준안과도 상치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보류하여 계속 심사하는 것이 타당함.

나. 찬성토론

(1차회의시)

- 장애인편의시설을 준공검사전에 확인하여 장애인 편의를 도모하고자 사전점검을 하는 것이므로 가결하는 것이 합당함.

(2차회의시)

- 점검요원 위촉대상자를 공무원과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요원으로 그 대상을 명확히 하여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.

5. 심사결과 : 『수정의결』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부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

| |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의안 번호 | 관련 제458호 |
| 의결 년월일 | 2009. 12. 23. (제157회) |

제안년월일 : 2009. 12. 16.

제안자 : 행정복지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요원에게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다소 오해소지가 있어 점검요원의 대상과 업무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함.

2. 수정 주요골자

- 점검요원의 대상을 “소속 공무원과 부천시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요원 중 시설주관 기관이 점검요원으로 위촉한 자”로 하고, 업무범위를 “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, 점검 및 확인”으로 명확히 규정함.(안 제6조)
- 현실성이 없는 모호한 규정인 점검요원의 의무 조항을 삭제함.
(안 제7조 3항)

부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

부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6조(점검요원 등) ① 점검은 시설주관기관 소속 공무원과 부천시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요원 중 시설주관기관이 점검요원으로 위촉한 자가 그 업무를 수행한다.

② 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, 점검 및 확인으로 한다.

안 제7조 3항을 삭제한다.

위의 수정부분 이외의 『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제정안과 같음.』

신구조문 대비표

| 제 정 안 | 수 정 안 |
|--|---|
| <p>제6조(점검요원 등) ① <u>점검요원은 부천시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요원 중 시설주관기관이 위촉한 자로 한다.</u></p> <p>② <u>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현장조사, 점검 및 확인으로 한다.</u></p> <p>제7조(점검요원의 의무) ③ <u>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, 점검,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.</u></p> | <p>제6조(점검요원 등) ① <u>점검은 시설주관기관 소속 공무원과 부천시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요원 중 시설주관기관이 점검요원으로 위촉한 자가 그 업무를 수행한다.</u></p> <p>② <u>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, 점검 및 확인으로 한다.</u></p> <p>제7조(점검요원의 의무) ③ (삭 제)</p> |

부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사전점검”이란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소속공무원 및 점검요원이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.
2. “시설주관기관”이란 시장을 말한다.
3.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른 용어는 법 제2조와 같다.

제3조(편의시설에 대한 점검)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법 제22조에 따라 소속공무원 및 점검요원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할 수 있다.

제4조(사전점검 대상) 사전점검 대상은 법 제7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로 한다.

제5조(사전점검 시기 및 방법) ①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과 점검요원 2명 이내로 한다.

제6조(점검요원 등) ① 점검은 시설주관기관 소속 공무원과 부천시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요원 중 시설주관기관이 점검요

원으로 위촉한 자가 그 업무를 수행한다.

② 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, 점검 및 확인으로 한다.

③ 업무를 수행한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시설주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7조(점검요원의 의무) 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

②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

제8조(시설주관기관의 의무) ① 시설주관기관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,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.

② 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요원에게 미리 통보 하여야 한다.

제9조(시설주의 의무)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
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 및 관련자료 제시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.

제10조(점검결과의 보고) 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점검결과보고서(이하 “보고서”라 한다)를 작성하여 시설주관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

있다.

제11조(점검결과의 반영) ① 시설주관기관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② 시설주관기관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[수정안 포함]

부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사전점검”이란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소속공무원 및 점검요원이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.
2. “시설주관기관”이란 시장을 말한다.
3.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른 용어는 법 제2조와 같다.

제3조(편의시설에 대한 점검)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법 제22조에 따라 소속공무원 및 점검요원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할 수 있다.

제4조(사전점검 대상) 사전점검 대상은 법 제7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로 한다.

제5조(사전점검 시기 및 방법) ①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

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과 점검요원 2명 이내로 한다.

제6조(점검요원 등) ① 점검은 시설주관기관 소속 공무원과 부천시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요원 중 시설주관기관이 점검요원으로 위촉한 자가 그 업무를 수행한다.

② 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, 점검 및 확인으로 한다.

③ 업무를 수행한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시설주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7조(점검요원의 의무) 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

②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

제8조(시설주관기관의 의무) ① 시설주관기관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,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.

② 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요원에게 미리 통보 하여야 한다.

제9조(시설주의 의무)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
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 및 관련자료 제시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.

제10조(점검결과의 보고) 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점검결과보고서(이하 “보고서”라 한다)를 작성하여 시설주관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11조(점검결과의 반영) ① 시설주관기관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② 시설주관기관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